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3. 8. 29.

운영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: 2023년 8월 11일
- 나. 발 의 자: 김지연 의원 외 5명
- 다. 회부일자: 2023년 8월 24일
- 라. 상정일자: 제24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(2023. 8. 28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남완현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상위 법령인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과 중복되는 조항을 정비하여 불필요한 개정을 최소화하고, 장기근속 직원의 특별휴가 일수 신설·확대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근속직원 장기재직 특별휴가 일수 신설·확대(안 제5조)
 -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직원에게 장기재직 특별휴가 5일 부여 신설

- 30년 이상 장기근속 직원의 장기재직 특별휴가 30일로 확대

○ 상위법령 중복 조항 삭제(안 제6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김정진)

○ 본 제정조례안은

- 상위 법령인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과 중복되는 조항을 정비하여 불필요한 개정을 최소화하고, 장기근속 직원의 특별휴가 일수 신설·확대하고자 발의된 안건임

○ 검토 결과

-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의회의 중 재직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한 구의회는 14곳¹⁾이고,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30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한 구의회는 14곳²⁾이며, 우리 구 집행기관 또한 제245회 제1차 정례회에서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」 개정을 통해 특별휴가 일수를 확대 부여함에 따라 직원 간 형평성 제고 및 직원 복지 향상을 위해 특별휴가 조항을 개정하였으며,
- 상위 법령인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제7조의9 및 별표2에서 규정한 내용을 단순히 재기재하는 현행 조례 제6조 및 별표3을 삭제하여 입법경제성을 제고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, 조례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체계나 자구에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심사결과: 원안 가결

1) 강동구, 관악구, 구로구, 금천구, 노원구, 도봉구, 동대문구, 서대문구, 성동구, 송파구, 양천구, 용산구, 종로구, 중랑구

2) 강남구, 강동구, 관악구, 구로구, 노원구, 도봉구, 동대문구, 서대문구, 성동구, 성북구, 송파구, 양천구, 종로구, 중랑구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김지연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92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: 2023. 8. .

발의자: 김지연, 유승용, 신희식,
우경란, 임현호, 이순우
의원(6인)

1. 제안이유

상위 법령인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과 중복되는 조항을 정비하여 불필요한 개정을 최소화하고, 장기근속 직원의 특별휴가 일수 신설·확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근속직원 장기재직 특별휴가 일수 신설·확대(안 제5조)

- 1)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직원에게 장기재직 특별휴가 5일 부여 신설
- 2) 30년 이상 장기근속 직원의 장기재직 특별휴가 30일로 확대

나. 상위법령 중복 조항 삭제(안 제6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다. 입법예고 : 생략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복무선서의 방법,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.

제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4호 및 제5호”를 “제2호 및 제4호”로 한다.

제5조제4항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나목부터 라목까지로 하고, 같은 호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호 라목(종전의 다목) 중 “20일”을 “30일”로 한다.

가.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: 5일

제6조를 삭제하고, 제7조를 제6조로 한다.

별표1의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별표2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비고 1.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.

2. 입양은 「입양특례법」에 따른 입양에 한정한다.

별표 3을 삭제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재직기간 계산에 대한 적용례) 제5조제4항제4호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을 합산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전에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합산한다.

제3조(특별휴가에 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다른 조례에 따라 제5조에 따른 특별휴가를 사용했거나 사용 중인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휴가를 사용했거나 사용 중인 것으로 본다.

[별표1의 2]

선서의 절차 및 방법(제2조제2항 관련)

1. 선서의 시기 및 장소

- 가. 공무원은 최초로 임용되어 임명장을 수여받을 때 의장 앞에서 선서를 하고,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명장을 수여받은 후에 선서를 하게 할 수 있다.
- 나.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가목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에서 선서를 한다. 이 경우 공직에 처음 임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선서를 한다.
- 다. 나목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을 개최하는 정무직 공무원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선서의 방법이나 내용 등을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.

2. 선서의 방식

- 가. 선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는 방식으로 한다.
- 나. 2명 이상이 함께 선서를 하는 경우에는 전원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자 1명이 낭독하게 할 수 있다.

3. 선서 책임자

선서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의정팀 또는 의장이 따로 지정하는 팀장이 담당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2조(복무 선서) ① (생략)</p> <p>② 복무 선서는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는 방식으로 하며, 2명 이상이 함께 복무 선서를 하는 경우에는 복무 선서를 하는 모두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자 1명이 낭독하도록 할 수 있다.</p> <p>제5조(특별휴가) ① ~ ③ (생략)</p> <p>④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제7조의7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특별휴가는 각 호와 같으며,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특별휴가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4. 의장은 장기재직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각각 다음 각 목과 같이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,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.</p> <p><신설></p> <p>가.·나. (생략)</p>	<p>제2조(복무 선서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복무 선서의 방법,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.</p> <p>제5조(특별휴가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 ----- ----- 제2호 및 제4호----- 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----- ----- -----.</p> <p>가.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: 5일</p> <p>나.·다. (현행 가목 및 나목과 같음)</p>

다.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: 20
일

5.·6. (생략)

제6조(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
시임기제공무원의 휴가에 관한 특
례)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
시임기제공무원의 휴가는 [별표 3]
에 따른다.

제7조 (생략)

라. ----- 30일

5.·6. (현행과 같음)

<삭제>

제6조 (현행 제7조와 같음)